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0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 권칠승·이병진·박해철

조 국・홍기원・박지원

이기헌 • 안태준 • 문금주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정액에 따라 발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다보니 예산배정액이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 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및 제5조).

법률 제 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 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전단 중 "지역사랑상품권을"을 "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사 랑상품권발행계획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 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한 것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~ ③ (생 략)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<신 설> 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 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 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 전부장관은 신고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5조(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제5조(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) ① 지방자 발행 폐지의 신고) ① ----------제4조제4항에 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 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----사랑상품권의 종류 · 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